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8228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8228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가단77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허은경

변론종결 2023. 7. 6.

판결선고 2023. 8.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가단77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 3층을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뒤, 2016년 7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고,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2017. 7. 20.경 피고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된 월 차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착오로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 중 63,000,000원은 착오 송금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위 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7월경 원고 소유 인천 부평구 C 소재 주택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 3층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10월경 위 주택 3층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7. 7. 20. 70,000,000원, 2017. 10. 21. 원고의 아들 D를 통하여 9,000,000원 등 합계 7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과의 차액 1,000,000원은 피고가 2017. 7. 20.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2017. 10. 21. 위 주택 3층을 인도하기까지 3개월간 더 거주한 점을 고려하여 공제)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 중 63,000,000원은 착오 송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6년 7월경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 중 감액된 70,000,000원을 반환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년 7월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반환해 주었다거나 2016년 7월 이후 피고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매달 500,000원{원고는 2017. 7. 20.경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이 3,000,000원(6개월분)이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2016년 7월경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나머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어야 한다}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대리인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2016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이 법원은 그러한 자료가 제시되면 변론을 재개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에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 그 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7. 7. 20. 피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 중 63,000,000원이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권성우, 판사 이민영